입법동향 - 2024년 제9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1
2. 「대구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 8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12
2.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 ····· 25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기본법」 개정 ····· 27
2.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 36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44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금지 내용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49
2.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 53

Ⅵ.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정보화 기본법」의 특수법인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 여부 ···· 59
2.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 65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4. 7. 4.] [전라남도조례 제6067호, 2024. 7. 4.,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전라남도 내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3조～제4조).
다.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14조～제1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전라남도)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의 **2024년 노인 일자리**는 2023년도 대비 14.4% 증가한 **7만 8841개**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0.1%로 확대**되어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통·폐합 하는** 등의 **조례 제·개정 검토가 필요함.**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4. 7. 4.] [전라남도조례 제6067호, 2024. 7.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 및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노후준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및 노인빈곤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인식 제고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와 지속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채용기업 창업
2.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3. 노인친화기업 지원
4. 노인공익활동사업
5.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5조(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2.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3. 교육 및 홍보
4.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제1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통합 관리·지원 등을 위한 전라남도 노인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일자리 및 사회활동 수행기관 효율화)

① 도지사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수행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 등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체계 방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참여자 보호)

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노후준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로 본다.

2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 9.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91호, 2024. 9. 20.,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의의와 중요성 및 근로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근로 및 직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켜 **근로 권리보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윤리적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를 규정함(안 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강원, 대구)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5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43%에 머무르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젊은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직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윤리적 직업관 형성**을 위해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 9.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91호, 2024. 9.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으며,**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 등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제3조(기본원칙)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은 학생이 올바른 근로 권리보호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

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관련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간혁신 구역은 총 3가지**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임.

【도시계획 혁신방안】

구 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적용대상	제한없음	점진적 전환 필요지역	국민편의 제고 위한 지역
토지이용	용적률·건폐율 자유롭게 계획	타 용도시설 설치 허용	설치 제한된 시설 복합화 허용
기대효과	도심 고밀 융복합 개발	쇠퇴 구도심 등 복합지역 전환	도로·철도 상부복합개발 등

○ 우리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 <삭제 2009. 3. 6>

제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5.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설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할 것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를 것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것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의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시·건축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10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⑧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조언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1. 5.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북자치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2(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중복할 수 없으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 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위원 발언내용, 심의결과, 심의위원 제척·회피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기가 서명 후 간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단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군 개발사업 등에 관한 검토·자문

제2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의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제2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제2종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4. 전통경관지구 : 전통경관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 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 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건축조례중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 용도지구는 오른쪽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종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2.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3조(「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8호, 2024.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지역의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설치와 해당 지역에서의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 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정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없음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우리 도는 **탄소, 수소, 자동차 등의 규제자유특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는 상황**임.

○ 반면, 제주도와 부산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바,

○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국회도서관, 2024-17호, 통권 제255호, 조경희】

◇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농촌을 둘러싼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이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은** 수입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국민 식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農政)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의 구축,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유지와 농촌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등이다.

◇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는 식량 자급기반의 강화와 경쟁력 있는 농정제도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향후 우리 농업 입법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주제어	기후위기, 지역소멸위기, 식량시스템, 생활인구, 친환경농업

□ 도입

❍ **1999년 7월 제정된 일본「식량·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기본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 법령의 상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은 기본이념으로 **식량의 안정공급, 농업 생산활동의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은** 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량·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저조한 수준**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뿐 아니라 농업인 감소로 인하여 농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은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식량가격을 상승**시켰다.

❍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2022년 9월 식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의 강화와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검토를 농림수산성에 지시하였다.

-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된 자문기관인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 기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다.
-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의 국내외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20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로 ①식량 안전보장의 강화, ②농업인 및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③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농업, ④국내시장의 축소 문제를 검토하여, 2023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본 농림수산성이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의 최종보고서를 반영하여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은 5월 29일 가결되었고, 6월 5일에 공포·시행되고 있다.

□ 식량 · 농업 · 농촌 정책심의회의 주요 검토내용

❍ **【식량 안전보장의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흉작**이나 **국제 분쟁의 발생**은 **식량 시장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 산지의 수출 제한이라는 인위적인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식량 시장을 둘러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有事時, 비상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식량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과 식자재의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여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 **【농업인 및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농업인 및 농촌인구**의 **감소**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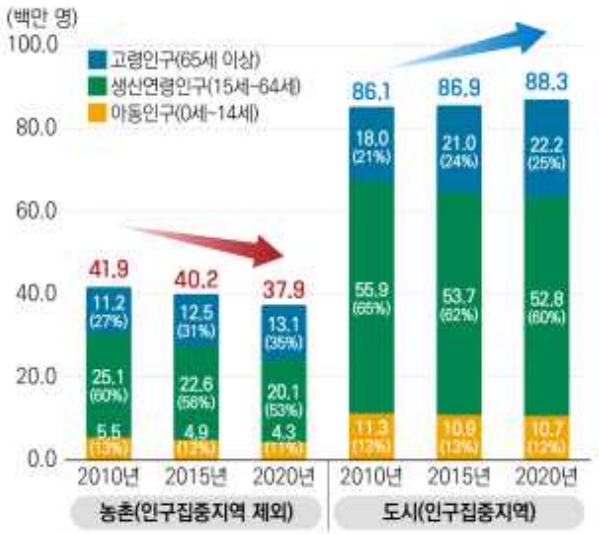
- [그림 1]과 같이 **농업인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 농업경영체가 제한된 자본과 노동력**으로 국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마을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림 2]).

마을은 주민에게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계승, 자연과 국토의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최근 농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관계인구(우리나라 생활인구에 해당)'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일본 연령별 농업인 비율(2021·2022년)



그림 2 일본 농촌과 도시의 인구 현황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농업】** 농업 및 농식품 분야에서도 농산물 등의 원료 조달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농작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는 기업의 재무성과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농업 원료 조달에서도 **환경과 인권에 대한 배려, 식품 손실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시장의 축소 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 국내시장의 축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일본 농림수산성은 세계와 일본의 인구 및 농업시장을 다음과 같이 추계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에서 2025년 98억 명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에, **일본 인구는 1억 2,586만 명에서 2050년 1억 190만 명으로 20% 감소**를 예상한다. 그리고 **인구의 증감으로 세계 농업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일본 시장은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식량 · 농업 · 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

❍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 개정 전 기본법은 '유사시(비상시)'에 대해서만 식량안보를 다루었다. **개정 기본법**은 **평상시에도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상시적 식량안보와 식량의 원활한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제19조).
- 개정 기본법은 **유사시 상황을 '흉작이나 수입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의 식량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태**'라고 정하고, 유사시 국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4조). 또한 불안정적인 식량 수입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와 국산 농자재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2조).

제19조 식량 접근성 향상 신설
- 식량 수송수단 확보(물류거점 정비 등)
- 식량 기부 활성화 환경조성

제21조 농산물 등의 수입 조치 개정
- 민관 연계를 통한 수입 상대국 다양화
- 수입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제24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 개정
- 돌발사태 발생 우려 시부터 관계행정기관 상호연계 강화
- 비축 식량 공급과 식량 수입 확대

제42조 농자재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 및 유통 확보 개정
- 농자재 가격의 급락에 따른 농업경영에의 영향 완화대책

❍ 친환경 식량시스템의 구축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는 환경 내 독성을 증가시키고 토양 및 수질의 산성화 등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개정 전 기본법에서도 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침에서 환경부담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기본법**은 **환경을 고려한 식량시스템(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적 및 물적인 활동)의 확립과 환경부담 완화를 고려한 농업 촉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2조).

제3조 환경을 고려한 식량시스템 확립 신설
- 식량공급 각 단계에서의 환경부담적 측면 완화

제32조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 촉진 신설
- 농약·사료 적정 사용, 가축분뇨 활용 및 환경부담 완화 생산방식 도입
- 환경부담 완화 평가방법 개발

❍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의 유지

- 농촌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의 대도시 전출로 인해 향후에는 소수 농업인만으로 국내 식량을 공급해야 하므로 **법인경영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기본법**은 인구감소 상황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농지 확보, 농업법인 경영기반의 강화, 농지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
- 스마트 농업기술을 통하여 토지 활용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기본법은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위·수탁을 포함한 농업경영 지원 사업자의 활동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37조).
- **수출용 농산물 증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출국가 규제에 대응한 농업시설 정비 등 수출지원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2조 농산물 수출 촉진 신설
- 수출산지 육성, 수출품목단체 지원, 수출판로 확대 지원, 지식재산보호, 수출상대국과 협의(동식물 검역 등)

제26조 바람직한 농업구조 확립 개정
- 지역 협의를 바탕으로 한 농업경영인 등의 농지 확보 배려

제27조 농업경영 전개 개정
- 농업경영법인의 경영기반 강화 능력 제고, 근무환경 정비, 자기자본 확충 강구

제28조 농지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정
-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규모 확대 및 집단화 촉진

제30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신설
-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 방식 도입
- 노동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제37조 농업경영지원자 사업활동 촉진 신설
- 인구감소 상황에서 농업경영지원자(농작업 수탁, 농기계 대여 등)의 사업활동 촉진

❍ 지역 인구감소를 고려한 농촌기능의 유지

- 농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의 유지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줄어드는 농촌인구로는 농촌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책**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농촌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거점 농촌지역 운영조직(농촌 RMO)8)에 대한 기대도 높다.**

- **개정 기본법**은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식량,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촌 공동활동의 중요성과 관계인구의 증가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44조, 제45조)

제12조 식량, 농업 및 농촌 관련단체의 노력 신설
- 농업인, 식품산업사업자, 지역주민과 소비자를 위한 식량, 농업 및 농촌 관련단체의 활동 촉진

제44조 농지 보전을 위한 공동활동 촉진 신설
- 지역농업의 지속 및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농업인 및 농촌과 관계를 맺는 사람(관계인구)의 농지 보전 공동활동 촉진

제45조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 촉진 신설
-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업과 농업 이외 산업의 연계활동 촉진

❍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 농산물이나 농식품에 대한 **과도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그동안 식량가격 형성에 있어서 **생산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개정 기본법**은 식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식량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제23조).

제23조 합리적인 식량가격 형성 신설
-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성에 대한 식품시스템 관계자의 이해 증진
- 식량비용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시사점

❍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지역공동체 유지와 농촌사회 안정을 위한 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촉진,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022년 216.6만 명에서 2023년

214.2만 명으로 1.1% 감소했으며,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49.8%에서 52.6%로 2.8% 증가했다. 게다가 농지면적은 도시 산업화에 따라 비농업 전용으로 되어 2022년 152만 8천ha에서 2023년 151만 2천ha로 1.1% 감소하여, **예상치 못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일본의 개정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시적 식량안보의 유지, ▲환경을 고려한 식량 시스템의 확립, ▲농업인 감소에 대비한 첨단기술 활용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농촌기능 유지를 위한 관계인구의 증가와 마을 공동활동의 지원, ▲식량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책정 등이 특징이다.

❍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도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기초하여 식량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이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 1]처럼 일본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이후 여러 농업 법령의 제·개정이 뒤따르고 있어, 비교법적 관점에서 향후 일본 농업 분야의 입법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1 일본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이후 농업 분야 입법 동향

입법 동향	내용
식량공급 곤란사태대책법 제정	식량공급 곤란사태 대책본부 신설, 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수입과 생산 촉진, 출하 조정 규정(2024.6.21. 공포, 1년 내 시행 예정)
농지 확보와 이용의 농업진흥지역정비법 개정	농지면적 확보, 농지전용 조치, 농지소유 적격법인·식품사업자 연계인정제도 신설 (2024.6.21. 공포, 1년 내 시행 예정)
농업생산성 향상 스마트 농업기술 법률 제정	스마트기술 활용과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에 대한 인정제도 및 지원 조치 규정 (2024.6.21. 공포, 6월 내 시행 예정)
지속가능 식량시스템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가격형성 법제화 검토	식량시스템 관계자 협의를 통한 비용지표 마련, 합리적 비용구조 신설 (2025년 법안 제출 예정)
농업용 시설보전을 위한 토지개량 법제화 검토	용배수시설 절차 간소화, 토지개량지구 체제 정비, 긴급방재사업에 노후화 대책 추가 등을 법제화(2025년 법안 제출 예정)
환경부담 완화 활동 지원제도 신설 검토	농약과 비료의 적정사용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 지급 시범실시 후 환경부담완화 보조금제도 신설 검토(2027년 신설 예정)

출처: 농림수산성[10]

관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 승준호, 이동소, 임혜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
- 農林水産省, 食料､農業及び農村に係る基本的な政策の検証の諮問の答申, 2023
- 加集雄也, 食料･農業･農村基本法の検証･見直し, 農畜産業振興機構 野菜情報, 2024

2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5호, 통권 제253호, 최서지】

◇ 순환경제체제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체제이다. 순환경제체제의 핵심 개념인 **에코디자인 (Ecodesign)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내구성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의 설계 절차**를 의미한다.

◇ 영국은 2010년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에코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이후 동 규정을 적용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강화되었다. 2021년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에 자원의 순환성 요건을 추가하고, 에너지 관련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중 소비자 구매 비중이 높은 제품에 에너지 라벨링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순환경제체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하여 자원순환의 범위를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서 추진한 에코디자인을 통한 순환경제체제 관련 법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효율적인 정착과 향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주제어 에코디자인, 순환경제체제, 지속가능한 제품, 에너지 라벨링, 자원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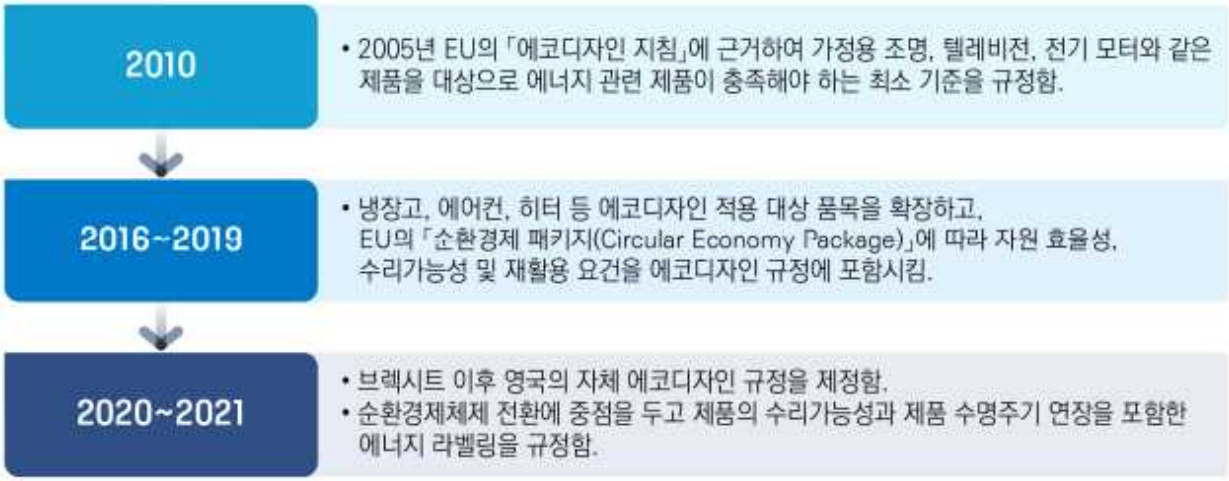
□ 도입

❍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사용→폐기】라는 전통적인 선형경제(Linear Economy) 체제**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품의 【설계→생산→소비 및 사용→재활용】이라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순환경제체제에서 에코디자인(Ecodesign)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제품의 재사용·수리 및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 에코디자인은 2005년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2005/32/EC)」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2010년 영국**은 EU 지침의 국내 이행을 위한 「2010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0, 이하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에서 **에코디자인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EU의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는 영국의 에코디자인 규정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었다.

❍ 2021년 에코디자인과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를 위하여 「2010 에너지 제품 규정」과 「2011 에너지 정보 규정(Energy Information Regulations 2011)」을 통합·개정하여 「2021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EnergyтRelated Products and Energy Information Regulations 2021, 이하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을 제정하였다.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자체적인 에코디자인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1 영국의 에코디자인 관련 규정 변천 과정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영국에서 에코디자인은**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자원 효율성, 폐기물 감소,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및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제품의 평가 기준이 세분화·전문화되고, 정보공개 강화로 인하여 추상적 의무가 보다 구체적인 규범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2010 에너지 제품 규정」과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의 주요 내용 비교

7내용	2010 에너지 제품 규정	2021 에너지 정보 규정
범위	•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	•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규정
에너지 라벨링	• 관련 규정 없음	• 공개해야 할 제품 관련 정보 규정 • 제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라벨 표시
이행	• 에코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생산에 중점	• 제품의 검증 절차와 시장 감시 및 집행을 통한 규정 준수 강화
시장 감시	• 관련 규정 없음	•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규정 모두 시장 감시 대상
기술문서 및 검증	• 제조업체의 기술문서 보관 의무	• 기술문서의 내용 구체화 • 시장 감시기관의 검증절차 규정
EU 지침 적용	• 에코디자인과 관련한 EU 지침 이행	• 브렉시트 이후 국내 조정사항 반영 및 영국의 추가 요구사항 규정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제 주요 내용

1. 에너지 효율 표준

❍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은 제정 당시 가전제품, 조명제품, 난방 및 냉방 장비 등 에너지를 사용·생성·전달·측정하는 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성능 표준을 규정하였다.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산업장비, 건축자재와 같이 간접적으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표준도 규정하고 있다.

표 2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에 따른 제품별 주요 내용(2024년 현재)

제품 카테고리	규제 대상 제품	주요 내용
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 에너지 효율성, 물 소비량 및 이용 효율성
조명	• 백열전구, 형광전구, 조명기구	• 비효율적인 조명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에너지 효율적 대안 권고 (예: LED)
난방 및 냉방장비	• 보일러, 온수기, 에어컨, 환기시스템	• 난방 및 냉방시 에너지 소비를 줄여 고효율 표준을 보장
전자제품	• 텔레비전, 셋톱박스, 컴퓨터 모니터	• 활성 및 대기 모드에서 전력 소모 최소화
산업제품	• 전기 모터, 변압기	• 산업용 장비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사용 보장
건축 관련 제품	• 창문, 단열재	• 단열성 개선, 열전달 감소,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은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 기관에서 제품별 기술 사양 충족에 대한 확인 문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문서에는 ①품질, 성능, 환경 보호, 건강, 안전과 관련한 제품 측정 결과, ②품질, 성능, 환경 보호, 건강 및 안전을 포함하여 해당 제품에 필요한 특성, ③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품 수명주기의 효율성

❍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은** 에너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품 수명주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에서 규정하는 에코디자인 관련 요건은 ①제품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재활용과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②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에너지 표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③내구성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 재료 사용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원칙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다.
-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은 에너지 효율 표준의 구체화, 자원 효율성을 위하여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표 3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의 제품 수명주기 효율성 개선 관련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에너지 효율 표준	•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표준 – 에너지 소비 –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 등
자원 효율성	• 제조업체, 대리점 또는 수입업체의 예비부품 제공 의무 – 냉장고의 경우 광원, 인쇄회로 기판, 온도 센서, 온도 조절 장치는 7년 이상 제공 – 문 손잡이 및 경첩, 선반과 바구니는 10년 이상 제공
수리 관련 정보 제공	• 제품 출시 후 2년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예비부품 목록과 주문 절차 등의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 • 예비부품을 이용가능한 기간 동안 정보 제공
전문 수리업체에 제공하는 수리 정보 내용	• 전문 수리업체에 가전제품 수리 및 유지관리 정보 제공 – 명확한 기기 정보, 분해도(disassembly map), 필요한 수리 및 테스트 장비 목록, 구성 요소 및 측정 정보, 배선 및 연결 다이어그램, 진단 오류 및 오류 코드(제조업체별 코드 포함), 고장 사고의 데이터 기록 정보 등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3. 에너지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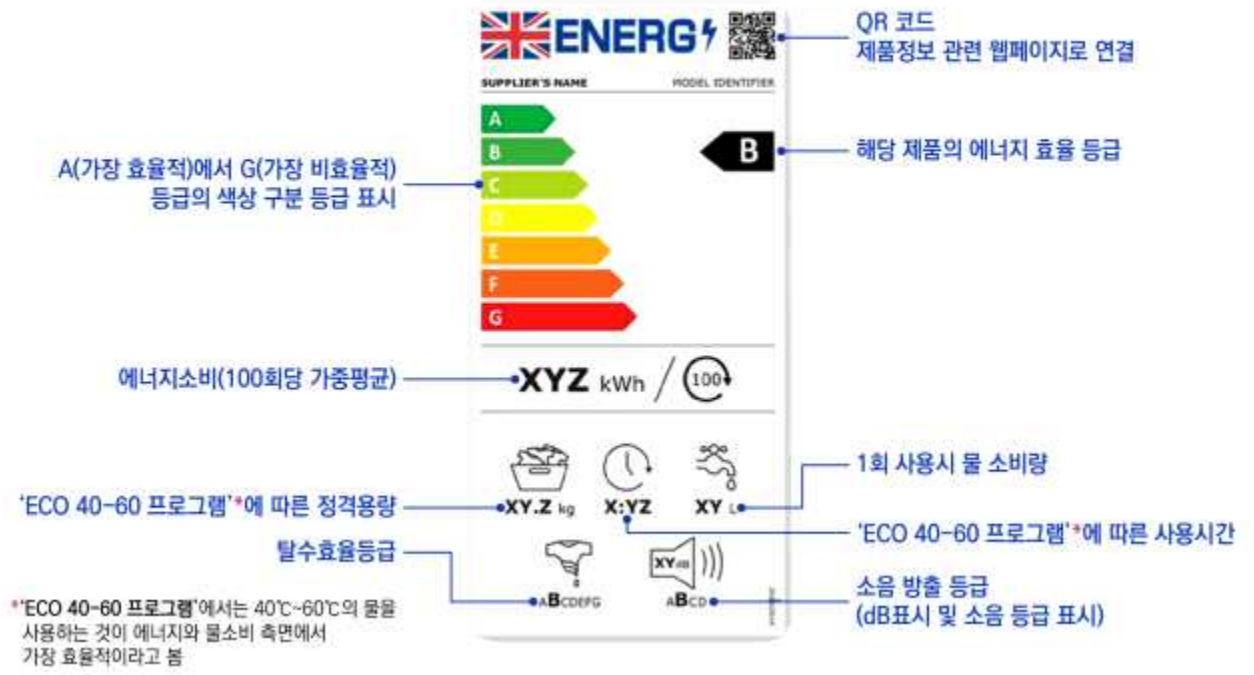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인 에너지 정보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는 에너지 라벨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은 각 제품의 에코디자인 적합성 평가 자료를 보관하도록 제조업체의 의무를 규정한다. 적합성 평가 자료에는 제품 및 용도에 대한 설명, 제품 디자인 평가에 있어 환경 평가 연구결과, 필요한 경우 에코디자인과 관련한 제품설계 사양,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행조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해결 방안, 재활용과 관련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나아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표준화된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은 에너지 라벨링 의무를 규정하였다. 즉 **에너지 라벨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구성,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 현재 에너지 라벨링은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븐, 텔레비전 등 19개의 제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림 2 에너지 라벨링 정보의 내용(예시: 세탁기)



4. 시장 감시기구

❍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은 에너지 라벨링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제품 안전 및 표준 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이하 사무국)'을 규정한다. 사무국은 제품이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 규정을 이행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표 4 제품 안전 및 표준 사무국의 주요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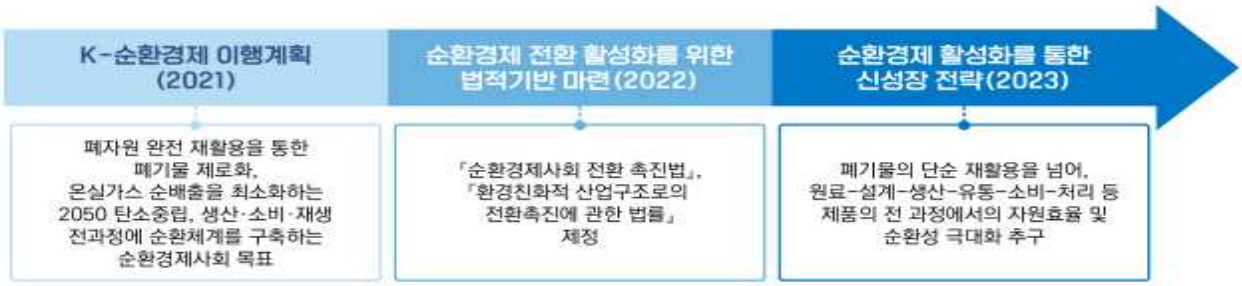
항목	주요 내용
역할 및 책임	•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보장 – 제품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검사, 테스트 포함
권한	• 제조업체에 대하여 기술문서 요청 • 문서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제품 테스트 • 제품의 리콜이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시정조치의 시행
강제 조치	• 검사 결과에서 불일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시정조치 부과 또는 제품의 시장 철수, 벌금 또는 처벌 부과
감시 방법	• 제품의 무작위 테스트 등 사전적 시장 감시와 소비자의 불만사항 신고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보고 의무	• 조사 결과와 조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소비자 보호	• 시중의 제품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규제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보장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기본법」을 2022년 전면 개정하여 **원료 및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 순환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출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생산단계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순환원료의 품질 개선 및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제16조 및 제18조), ②유통단계에서 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 포장재의 표준화, 유통 포장재의 감량 또는 순환이용 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제19조), ③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의 확보 및 제품 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하위법에 위임하였다(제20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유통·사용 단계의 순환사용 촉진은 영국 에코디자인의 목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에코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체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2010 에너지 제품 규정」에서 에코디자인의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의 확대 및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2021 에너지 정보 규정」에서 **정부의 정책 및 법률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라벨링 의무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하여 제조업체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는 순환경제를 고려한 소비를 권장**한다. 이러한 **영국의 에코디자인 개념은 우리나라가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제품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관련 자료

- 국회미래연구원, 2023.12.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7.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 Policy Update: Placing products on the market in Great Britain using UK or EU product markings, January 2024, UK 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9월 첫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문화체육관광	○ Gen Z 콘텐츠 이용 트렌드 ○ 문화예술 상품 수출 증가의 요인과 시사점
	행정안전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 공공기관 정책의 현황과 쟁점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관련 쟁점 분석 및 정책방향 ○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기능 및 인력현황
	외교통일,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시행 배경과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인공지능 시대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 데이터 기반 유망 연구자 발굴 체계 마련 ○ 통신이용자정보 활용 통제 논의와 수사·정보기관의 과제 ○ 디지털 대전환(DX·AX)과 '디지털 위험 관리'의 중요성
	여성가족, 교육	○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외교통일	○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 '포린어페어스'를 통해 본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정책 ○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NATO-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협력 ○ 〈8 .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의지의 결집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교육	○ 수행형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로그 데이터 활용 방안 탐색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9월 첫째주	**보건복지**	○ 재난 이후,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 경기도 청년층의 심리적 안녕 실태와 시사점 ○ 엠폭스발 글로벌 보건 위협과 국제협력적 과제
	국방	○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 통합억제, 군사적 쟁점과 과제
	여성가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9월 둘째주	**행정안전, 교육**	○ 인천광역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교육	○교과연계형 인공지능 융합교육 국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외교통일	○ 일본의 '모시토라' '호보토라' 대비 논의와 그 시사점 ○2018년 이래 북중 관계의 동향과 '관계 이상설'에 대한 평가 ○ 통일과 자주를 포기한 북한의 미래 ○ 미·이스라엘·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교훈 ○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 및 함의 ○ J.D. 밴스: MAGA 운동의 사도 바울?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 2024 美 대선 워치(8월)
	여성가족	○ 경상북도 2030세대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환경노동, 여성가족	○ 경북 여성의 ESG 실천 활동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제주지역 고용현황 및 성별 임금격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2024 vol. 3,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유럽의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기업 ○ OECD의 디지털 경제 측정 동향 ○ 생성형 AI와 협업할 준비 되셨나요?
	행정안전	○ 광주광역시 재난·안전 현황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 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9월 둘째주	국방	○잠재적 해양 안보 격전지 "해저 케이블" : 위협 증가와 한국에 대한 안보 함의 및 시사점
	기획재정	○캐나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3부, 잠재 유망 품목 전략시장 편 ○반도체 설계(Fabless) 중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역직구 수출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정무,기획재정	○가계대출규제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노동	○15분 생활권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와 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반려동물 산업 조사체계 진단 및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정무	○공모펀드 중개 허용 등 플랫폼 중개 영향력 점검
	국토교통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건복지	○농촌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이상 강우 현상에 따른 도내 주요 농산물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외교통일, 국토교통	○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9월 넷째주	국방	○김정은 핵무기연구소 및 우라늄농축시설 현지지도 분석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일본의 해양 무인 무기체계 ○인공지능-핵무기 넥서스(AI-Nuclear Nexus)와 세계군사질서 전망 ○AI 기반 자율무기체계, 인지전의 발전과 군사안보질서의 변화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9월 넷째주	국토교통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연구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디지털+X 글로벌 프로젝트 ○글로벌 Top 6 빅테크 기업 AI 투자 동향 ○미중 인공지능 생태계 디커플링 ○AI와 세계정치의 도전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빅테크(Big Tech) 이슈 ○품목별 ICT 시장동향 = ICT global market analysis : 블록체인 ○중국 문화의 디지털화 사례 및 국내 기업 시사점 ○Youtube 댓글을 통해 보는 미국 대선 지지 정당 감성분석
	외교통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배경과 전망 ○북한 최고지도부의 '24년 6~8월 공개활동 분석 ○미국 대선과 우리의 도전 및 기회 요인 ○러북 신조약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 쟁점과 파급영향 ○미중 사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 현안과 시사점 ○카멀라 해리스의 등판과 대선 쟁점 변수 :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 낙태, 국경 보안 그리고 경제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2024 미 대선 대비 EU의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방향 및 시사점 ○한국의 인태지역 역할 확대 방안
	교육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실태 및 과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 비세그라드 4개국(V4) 수출 유망품목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중국 전기차 혁신전략 및 시사점 ○김정은은 왜 우리 언론의 수해 보도에 화를 냈을까? ○동남아 최대 자동차금융 시장 인도네시아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인천시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을 위한 이슈와 제언 ○농식품 시장 경쟁력 분석과 수출 다변화 연구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9월 넷째주	기획재정	○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 행정안전	○ 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행정안전	○ 인천 재난안전산업 진흥 여건 및 방향 진단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외국인주민과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 인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바라보는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
	환경노동	○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법제사법, 환경노동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방안 연구
	정무	○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국토교통, 행정안전	○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건복지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에의 시사점
	기획재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견24-0294, 2024. 9. 2.)

□ 질의요지

가.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시·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제1호)을 고려할 것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포획·채취 기준에 의해서만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비어업인이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 인점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사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장소적 범위는 이러한 어구·방법·장비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이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시·도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하는 어구·방법·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전면적 금지를 시·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장소나 시간 등 보다 폭넓은 제한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65조제2호에서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결과가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검토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 등에 포획·채취의 시간적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대구광역시, 의견24-0293, 2024. 8. 29.)

□ 질의요지

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나.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다.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마.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급발진’ 및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급발진’ 등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 다, 라의 공통사항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고(제2항),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제1항**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제1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실태조사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호에서 국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구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태조사의 범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만으로 하여금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다른 법령상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

보면, **「교통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실태조사,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급발진 사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무 역시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 질의 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

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나,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경우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조례안에서 법령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급발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대구광역시조례안에서 '급발진' 및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더라도 법령상 정의와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대구광역시조례안에서 '급발진' 및 '급발진 의심사고'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도', '스스로 급가속', '의심되는 현상' 등의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4-0582, 2024. 9.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질의요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가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다목)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답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제4조제3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하며(제14조제1항),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의무(제18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제19조제1항)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책무 등을 부담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고, 출자·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제7조제1항),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제7조제2항) 등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②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20조)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른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사업, 재정 지원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 및 체계,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 법인과는 달리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구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책 마련, 접근성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일정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출자·출연기관은 「상법」,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방식**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 구성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일반법인 「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등에 따라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엄격한 설립 요건을 거쳐야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관련」【국토부 24-0639, 2024. 9. 23.】

□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시·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의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지?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그 **임대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제3항이 적용**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의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그 **임대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사업 등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주택임대차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임차인의 자격요건 변경,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계약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재계약을 거절하려는 경우 그 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그 재계약 거절 사유를 **예시가 아닌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의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사업 등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주택임대차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그 임대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생 략)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 ⑦ (생 략)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 다. (생 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동향 – 2024년 제9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